

법률의견서

- 2025. 8.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1. 들어가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보호가 되고(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등 결정),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 지연시키는 행위 등을 포함해 집회의 자유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들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8헌바137 결정).

8·15범시민대회 추진위원회가 2025. 8. 15. 21:00경부터 진행한 광복 80년 8.15범시민대회 행진(이하 “이 사건 행진”이라 합니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신고된 행진입니다. 시민사회의 주최로 매년 광복절에 진행되는 상징성 있는 행진이자, 광복 80주년을 맞아 시민들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행진입니다. 헌법 제21조에 따라 경찰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에게는 이 사건 행진을 방해하는 조치들을 금지했어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행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호했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차벽설치, 폭력행사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통해 이 사건 행진을 적극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찰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을 외치는 시민들의 광장을 폭력으로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 사건 행진에 참여한 8·15범시민대회 추진위원회의 일원이자 법률전문가단체로서 본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행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각종 방해행위가 불법행위이자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나아가 모임은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문책과 경찰 책임자들의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2. 이 사건의 개요

8·15범시민대회 추진위원회는 2025. 8. 15. 21:00경부터 송례문 앞에서 <광복 80년 8.15범시민대회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 행진은 당일 광화문에서 열리고 있던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행사를 고려하여 송례문 → 한국은행사거리 → 을지로사거리 → 종각사거리 → 안국사거리 → 서머셋팰리스서울 앞까지의 경로로 진행되는 행진이었고, 해당 경로에서의 행진에 대해 별도의 제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5. 8. 15. 경찰은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행진을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1) 경찰은 이 사건 행진이 개시되자마자 21:00부터 21:20까지 약 20분간 송례문과 한국은행 사이 남대문 시장 앞 사거리에서 경찰차량 2대를 이용해 이 사건 행진을 막아섰습니다. 21:00 이후 4분가량 행진 자체를 막고 출발을 지연시켰는데, 이 사건 행진이 출발한 이후에도 경찰은 차량 2대로 집회 방송차량을 막아서며 일반 보행속도보다 현저히 느리게 진행을 막는 등 이 사건 행진을 지속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보로 3-4분의 거리를 10분 이상 지체하며 이 사건 행진의 진행을 사실상 가로막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2) 경찰은 한국은행 앞에서 21:20경부터 약 5분간 경찰 경력을 이 사건 행진 전체를 아예 가로막고 진행을 중지시켰습니다. 경찰차량에 의한 행진방해에 항의하던 시민들이 해당 차량의 앞으로 나가자, 경찰은 경력을 동원해 이 사건 행진 대열을 가로막고, 행진경로에 따라 진행하려는 시민들의 목을 조르거나, 시민들을 밀치고 잡아당겼으며, 깃발을 탈취하려고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남성 경찰들이 여성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물리력을 행사하는 반인권적 폭력행위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경찰력을 우회하여 을지로 입구로 진입하여 행진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경찰은 21:29경부터 약 30분간 을지로입구역 사거리에서도 행진을 가로막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경력을 동원해 행진차량을 가로막았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대문경찰서 정보과장 오정오는 이 사건 집회가 불법집회라며 집회의 해산을 명하기도 했습니다.

4) 경찰은 22:02분경 다시 시작된 행진을 광고사거리에서 다시 막았습니다. 경찰은 행진경로에 미니버스 차벽을 설치하고, 경찰방패로 무장한 경력을 배치하여 약 10여분간 이 사건 행진을 막아섰습니다. 위 대치 이후 이 사건 행진이 다시 재개되었지만, 경찰은 22:15경 종로1가 사거리에서 경찰기동대 전경버스로 차벽을 설치하여 이 사건 행진을 다시 막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 행진은 21:00에 시작하여 22:50경에 종료되었는데, 이는 예정보다 1시간 이상 지체되어 종료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찰은 이 사건 행진의 진행 전 과정에서 차량과 경력의 동원, 차벽의 설치, 해산명령, 시민들에 대한 폭력행사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행진의 진행을 방해(이하 “이 사건 방해행위”라고 합니다)했습니다. 이하에서는 항을 나누어 이 사건 방해행위의 위법하여 불법행위 내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상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이 사건 방해행위의 위법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경찰은 이 사건의 행진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차량과 경력을 동원하여 이 사건 행진의 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차량의 서행을 통한 행진의 정상적 진행을 방해하고, 차량과 경력으로 전 차로를 막거나 차벽을 설치하여 이 사건 행진을 전면 차단하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각종 통행차단, 집회방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무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물품을 훼손하고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적법하게 신고된 이 사건 행진에 가해진 권력적 사실행위로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고, 이러한 즉시강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라면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찰권의 발동으로 위법합니다. 참고로 제한통고서에 기재된 각종 경찰의 지시와 행정조치에 따르거나 협조할 의무는 선신고 단체와 행진 중복 등 교통소통, 차량 통행로 확보, 집회 참가자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부과된 것일 뿐, 경찰의 일반적, 포괄적 즉시강제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행진의 정상적인 진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경찰이

보유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즉각 침해할 수 있는 즉시강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즉시강제는 그러한 행위 없이는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 즉 즉시강제가 없으면 곧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행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신고된 행진이고, 신고범위 내의 시간과 경로를 준수하는 행진이었습니다. 전 과정에서 평화적인 행진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행진 개시시점부터 이뤄진 이 사건 방해행위는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절박한 사태가 발생하지도 않았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뤄진 즉시강제이고, 따라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한 경찰권 행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행진에 참여한 집회 참가자에게 해산을 명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위법합니다. 집회의 해산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등 참조). 또한 시민들이 행진차단에 항의를 위해 앞서 나가거나 차량 및 차벽 등을 우회하기 위해 부득이 다른 차선을 이용하는 등 신고된 행진경로를 다소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경찰이 해산을 명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해산명령은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현장 사정으로 신고범위를 벗어난 집회는 해산명령에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0425 판결, 헌법재판소 2013. 12. 26. 2013헌바24 결정 등 참조).

이상과 같이 경찰의 이 사건 방해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즉시강제이고, 그 중 해산명령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인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동된 위법한 경찰권의 행사입니다. 이러한 위법한 경찰권의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시한 자에 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에 따른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집회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사건 방해행위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행진이 적법하게 신고된 행진이었다는 점,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법성이 명백한 이 사건 방해행위를 지시한 자에 대한 형사책임과 국가배상책임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결론

지난 정부 시기 경찰은 무도한 공권력 행사를 통해 광장 시민들의 목소리를 탄압했습니다. 시민들의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고, 집회와 행진을 주최한 자를 수사하고 기소했습니다. 우리 모임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새로운 정부의 경찰이 지난 정부 시기에서 달라지기는커녕 더욱 무도한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복 80주년이라는 상징성 있는 날에, 새로운 대통령을 국민이 임명하는 행사가 진행되는 날에, 한 쪽에서는 시민들을 무도하게 탄압하는 폭력이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적법하게 신고된 이 사건 행진에 대한 통행 차단 등 즉시강제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범죄이자 불법행위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좌시하지 않는 것이 국민주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정부의 사명임을 강조하며, 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날에 시민들의 평화로운 행진을 폭력으로 탄압한 경찰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하며, 책임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또한 향후 정부와 경찰은 지난 정권에서의 집회에 대한 적대적 대응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토대로 집회 및 시위의 헌법적 의미를 재확인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이러한 방식의 폭압적 집회시위 대처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쇄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5. 8.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